

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교통관리·경비[경호] 용역 과업설명서

I 행사개요

- 행사명: 「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」
- 기간: 2025. 5. 3. ~ 5. 5. / 3일간
- 장소: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안산문화광장
- 행사내용: 공연, 전시, 체험 등
- 주최/주관: 안산시/안산문화재단

II 과업의 개요

1. 용역명: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교통관리·경비(경호) 용역
2. 목적: 축제장 일원의 주변 도로 교통통제, 불법 주정차 해소, 축제장내 안전관리(자전거, 모빌리티 등) 및 시설물 보안
3.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 ~ 2025. 5. 6.(행사 종료 후 방호벽 철거 시까지)
- 실근무 기간: 2페이지 “2. 근무 인원 및 근무 시간 참조”
4. 과업장소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안산문화광장 일대
5. 기초금액: 금29,000,000원(금이천구백만원) / VAT포함

Ⅲ 과업수행지침

1. 과업의 내용

- 가. 과업 수행에 있어 2인 1조로 운영하되, 상시 대기 위한 계획 수립
 - 식사·휴식시간 등 자리 교대를 통해 상시 대기 유지
- 나. 행사장 도로변 통제·회차 및 교통 안내
- 다. 행사장내 질서유지(자전거 및 모빌리티)를 통한 관람객 안전 보호
- 라. 야간 경비 시 공연 물품 보안 관리 및 시설물 보안 관리
- 마. 기타 축제장 주변 질서유지를 위하여 “발주기관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수행 등

2.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

- 가. 근무기간: 2025. 5. 1. 22시 ~ 5. 6.(화) 06시까지
- 나. 근무인원: 90명

근무일	규격	인원	비고
5월1일(목)	심야 (5. 1. 22:00~5. 2. 02:00)	10	방호벽 설치 지원
5월2일(금)	주간 (10:00~18:00)	2	행사장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안 관리
	야간 (18:00~22:00)		
	심야 (22:00~10:00)	4	시설물 보안 관리
5월3일(토)	주간 (10:00~18:00)	20	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
	야간 (18:00~22:00)		
	심야 (22:00~10:00)	4	시설물 보안 관리
5월4일(일)	주간 (10:00~18:00)	20	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
	야간 (18:00~22:00)		
	심야 (22:00~10:00)	4	시설물 보안 관리
5월5일(월)	주간 (10:00~18:00)	20	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
	야간 (18:00~22:00)		
	심야 (22:00~05:00)	6	방호벽 철거시까지
계		90	

※ 근무시간은 축제의 사정에 따라 안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.

3. 일반 사항

가. 안전 및 경비인원의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이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 및 경비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한다.

나. 안전 및 경비구역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일자	5/1(금)	5/2(금)			5/3(토)		
구분	심야 (22~익일02)	주간 (10~18)	야간 (18~22)	심야 (22~익일10)	주간 (10~18)	야간 (18~22)	심야 (22~익일10)
	4시간	24시간			24시간		

일자	5/4(일)			5/5(월)		
구분	주간 (10~18)	야간 (18~22)	심야 (22~익일10)	주간 (10~18)	야간 (18~22)	심야 (22~익일05)
	24시간			19시간		

※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별 배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, 각종행사,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“발주기관”이 필요하여 요구할 시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다. “발주기관”은 효율적인 용역시행을 위하여 안전 및 경비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, 안전 및 경비요령, 안전 및 경비원의 교체 등 안전 및 경비 업무에 대하여 “계약상대자”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라.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대상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의 안전 및 경비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
마.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 및 경비대상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, 화재, 혼잡, 무단침입, 시설물 파손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고,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바.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지시서상 명기하지 않은 사항 중 “발주기관”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용역계약 시 보완 및 수정하여 시행한다.

4. 참가자격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「소상공인 보호

-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(‘소기업·소상 공인확인서’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직접 확인하며, 낙찰자는 계약체결일,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 함.) (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)
- 나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,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경비업(시설경비, 신변보호, 혼잡·교통유도경비) 허가를 득한 업체
- 다. 입찰 공고일 전날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]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,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
- 라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한 용역중 최근 5년 이내 경비용역 '2,900만원'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

IV 과업수행 주요 준수사항

1. 업무수행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 및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4장 제10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

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안전 및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
- 나. 용역 안전 및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발주기관”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,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“발주기관”의 요구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 및 경비업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“발주기관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인력의 출근부를 작성하고, 업무 종료 시 “발주기관”에 출근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의 실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만약 누설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진다.

2. 복장

통일된 근무복, 무전기, 호루라기, 교통 신호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. (모든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.)

3. 안전 및 경비 근무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고용경비원에게 “발주기관”이 제정한 근무 수칙을 준수토록 하며, 일일 안전 및 경비 상황과 이상 유무를 “발주기관”이 정하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 및 경비 근무 중 경비원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 및 경비구역을 순찰하도록 하며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“발주기관”에게 통보한다.
- 다. “계약상대자”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“발주기관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라.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,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“계약

상대자”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“발주기관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마. 전항의 근무 태만이란 근무지 이탈, 근무 중 음주, 수면, 빈번한 무단 결근 및 기타 “발주기관”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안전 및 경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4. 고용책임

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.

-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
-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
-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
-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
- 발주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보전에 대한 책임

5. 근무 준칙사항

가. 보 안

- 근무지 내에서 듣고, 보고,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분실물이나 습득물, 수상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“발주기관”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.
- 본 행사장 시설은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므로 항상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하며, 완벽한 보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.

나. 화재예방

- 화재 예방에 대한 소화전, 소화기 사용법을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.

- 화재위험성이 있는 제품 등은 허가 없이 사용을 금하고 화재의 원인이 될 모든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화재의 요인을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신고해야 한다.
-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6. 기타 사항

- 가. 용역 시행 중에 발생하는 민, 형사상 책임 및 법적 문제는 물론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손상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한다.
- 나. 당 재단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재단의 지시 및 의사에 따른다.

경비원 근무규칙

제1조 (경비원의 사명) 경비원은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내의 인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근면, 청렴, 친절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에 임하고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.

제2조 (경비원 복무자세)

1. 경비원은 언어 및 동작에 주의하여 경비구역 내의 방문객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하며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경솔한 행동이나 직권 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안전 및 경비구역 내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(소속, 성명, 입·출 시간, 용무 등)한 후 출입시킨다.
3. 경비원의 근무 편성은 매일 단위로 하고 “발주기관”의 소속 직원에게 확인받는다.

제3조 (금지행위) 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본 재단 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1. 경비원은 직무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경비원은 음주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, 특히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.
3. 근무 중 스마트폰, 신문, 잡지를 보거나 취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보안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5. 본 재단 소속 직원의 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본 재단 직원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 (보고 · 신고 등 통보)

1. 경비원은 근무상 필요한 보고 및 통보를 지휘계통으로 신속, 정확, 간결하게 보고한다.
2. 경비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때는 본 재단 소속 직원과 “계약상대자”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 및 경비업체에서는 근무자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 (비상소집) 안전 및 경비 조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비원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으며,

안전 및 경비업체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본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.

제6조 (직무범위) 경비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행사장 및 시설에 대한 안전 및 경비
2. 강제퇴거 집행 등의 지원
3. 안전 및 경비 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과 부대 시설에 대한 도난, 파괴, 화재, 무단침입으로부터 보호
4. 제3자로 인한 안전사고(자해, 폭행, 치상, 화재, 소요 행위 등) 예방 및 질서유지
5. 기타 행사장 내 출입자의 안내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및 경비구역 내의 안전 및 경비 정보 수집 등